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1349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담 담당변호사 정경욱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해량 담당변호사 전홍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동식

변론 종결 2022. 8. 23.

판결 선고 2022.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C과 사이에 대여금 30,000,000원, 변제기 2014. 5. 31.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나. C이 위 변제기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055호로 차용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8. 3. 13.자 이행권고결정이 C에게 2018. 4. 8. 송달되어 2018. 4. 24.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3.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8. 1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6. 8. 17.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1. 3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6. 채권최고액 52,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의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대여금 상당액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비용을 들여 매수한 부동산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빚을 갚고서 무주택자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아들인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 내지 공동담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환원시키기 위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아들인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4. 8. 12. 매수하여 1995.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속 거주하다가 포천시 F아파트 G호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여 2006. 8. 17. 아들인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나) 피고는 2년 후인 2008. 7. 10.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 와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돌려놓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증여세 2,000만 원 이상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기에 2008. 8. 26.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하여 말소하고 C 명의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6. 11.경 'H'라는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2016.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피고는 2009. 10. 23., 2011. 4. 14., 2012. 7. 30. 피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이전해준 2006. 8.경부터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C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수탁자인 C이 신탁행에 기한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기존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반정모

별지